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14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2020년 서울케어-돌봄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채용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일반직 5급 정원 및 6급이하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일반직 5급 : 55명 → 56명 (증 1명)
- 6급이하 소계 : 1,241명 → 1,240명 (감 1명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

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정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(03718)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1054, 팩스 02-330-1449